

평창군도시계획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회 부 경 위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1. 4. 4. 평창군수(도시경제과장)
- 나. 회 부 일 자 : 2001. 4. 17
- 다. 상 정 일 자 : 제84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제1차 조례특위(2001.4.17)
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도시경제과장 석명준)

가. 제 안 이 유

-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규정

나. 주 요 골 자

-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 입안시 주민의 참여기회를 다양화하고 주민이 제안하여 입안하게되는 도시계획의 반영기준 및 절차등을 규정
- 도시계획 입안시 공람·공고를 한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건축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.
-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중 지목이 대(垓)인 경우 소유자에게 매수 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예산확보를 위하여 발행하는 도시계획 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자율을 정함.
-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의 건축물등의 행위 허용범위를 정함.
- 지구단위계획의 지역대상 및 경미한 변경사항을 규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의 운용지침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함.
- 개발행위로 인한 도로·급수시설·배수시설등의 설치기준 및 건축물의 건축행위 허가기준, 토석채취 허가기준, 물건적치행위 허가

기준등을 정함.

- 지역·지구 및 구역안의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와 건폐율·용적률 등을 정함.
- 평창군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, 기능 및 운영절차에 관하여 규정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· (전문위원 : 박태영)

- 본 조례는 도시계획법·동법시행령·시행규칙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것임.

○ 도시계획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- 도시계획법 제22조·제36조·제37조·제40조·제49조·제54조·제55조·제86조와 시행령 제14조·제22조·제36조·제38조·제40조·제47조·제48조·제49조·제52조·제53조·제55조·제58조·제60조·제62조·제86조에서는 공청회, 주민의견청취,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, 점·사용료·도시계획시설의 상환기간 및 이율,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, 건축제한·건폐율·용적률·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
- 상위법령을 근거하였고 도의 준칙을 참고한 본 조례안의 내용은 도내 시군이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.

단지 건폐율과 용적률만이 시군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.

○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- 공청회는 개최하여야 한다. 개최후 14일간 주민의견청취 규정
- 도시계획입안의 제안에 대한 반영기준 및 절차
- 공람·공고에 관한 규정
-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, 이율은 1년만기 정기에금

금리로

-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중 지목이 대지인 경우 소유자에게 매수 청구권이 부여
-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의 건축물 등의 행위허용범위를 정함
- 지구단위 계획이 지역대상 및 경미한 변경사항을 규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의 운용지침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붙임:평창군도시계획조례안 1부